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69호)

2026. 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안 제4조 제2항 신설)	2
2. 개정안 부칙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6.

3. 회 부 일 :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안 제4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생략) <u><신설></u>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¹⁾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하는 것으로²⁾,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라고 한다)」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저출생 등 학령아동 감소로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전국 4,008개소가 폐교(2025년 누적 기준)되었고, 향후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³⁾.

□ 폐교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이지만 학교시설이 갖는 지리적·정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며, 지역의 중심시설로 인지성 및 접근성이 용이하고 운동장이라는 대규모 공지를 확보한 다양한 형태의 발전 가능성이 큰 공간임⁴⁾.

□ 현행법은 6가지 폐교의 활용 용도(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폐교활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3) 폐교재산 활용 사례, 2025.7., 교육부·행정안전부, p12

4) 폐교재산 활용 사례, 2025.7., 교육부·행정안전부, p13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를 규정하고 있는 데56), 특수학교 또한 교육용시설로써 폐교의 활용 대상에 포함되며, 대전해든학교의 경우 폐교를 활용하여 2021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음.

□ 시·도교육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7)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8)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도까지 매년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9),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높은 매입비 등

5) 「폐교활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폐교활용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 외에도 폐교는 어린이 놀이시설, 임대주택, 관사, 임시청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7)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4. 특수학교

8) 교육부(2025.8)

9) 2016년 87,950명, 2025년 120,73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으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¹⁰⁾로 인해 특수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존 폐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¹¹⁾

□ 또한, 폐교시설을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경우 특수학급의 과밀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²⁾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 시 폐교를 우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특수학교 신설 부지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수학교 설립 기간 단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¹³⁾.

10) “학부모 ‘무릎 호소’ 특수학교, 설립 길 열렸다”, 2025.09.10., 동아일보

11) 폐교재산 활용 사례, 2025.7., 교육부·행정안전부, p129

12) 폐교재산 활용 사례, 2025.7., 교육부·행정안전부, p130

13)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나,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신중검토 의견임.

- (신중검토) 폐교활용법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관계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 시 지자체(지역사회 등) 다양한 요구에 반할 수 있어 해당 특별법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학교 설립 및 폐교재산의 활용주체인 시도교육감의 권한 및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 시행 중인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으나, 계획 변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입법례 - 「폐교활용법」]

부칙<법률 제8166호, 2007. 1. 3.>

②(폐교재산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186